

의안번호	2216658
의 퇴 인	강대식의원
회 답 일	2026.3.23.
추계번호	26D0748

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영양관리)	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음(제2항 신설)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각군 부대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8조(영양관리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부대별로 영양사를 배치할 경우 급양관리관 및 식품검사장교 등과의 업무분담 및 인력배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, 영양사를 배치할 각군 부대의 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현재 각 군은 사단급 이상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가 표준식단 작성, 신규 레시피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, 단위부대의 경우 급양관리관이 조리 및 조리과정 감독, 장병 식생활 지도 등 급양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며, 식품검사 장교(수의 장교)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위생검사 및 생산업체 위생검사까지 전반적인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
- 현재, 각군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는 166명이며, 육군은 사단급 이상, 해군은 함대사령부 이상, 공군은 비행단 이상, 해병대는 사(여)단급 이상, 국직부대는 체육부대, 근무지원단, 병원 등에 배치되어 있는 등 각 부대의 성격에 따라 달리 편성되어 있음

[표 1] 영양사 배치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육군	해군	공군	해병대	국직	합계
인원	71	18	40	8	29	166
기준	사단급 이상	함대사령부 이상	비행단 이상	사(여)단급 이상	체육부대, 근무지원단, 병원 등	-

자료: 국방부

- 이상과 같이 영양사, 급양관리관, 식품검사장교 간의 업무분담 및 인원재 배치에 대한 고려, 영양사의 현재 배치현황 및 개정안에서 영양사를 배치할 각군 부대의 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배치될 영양사 인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